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67
----------	-----

2020. 3. 12.(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0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3월 12일

-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필수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시행 : 2020. 4. 1.)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직 소방공무원 정원을 두는 근거규정 및 소방현장 인력 보강 반영 등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직 소방공무원 정원을 두는 근거규정 추가 (안 제1조)
- 본문 내용 및 별표 제목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개정 (안 제1조~제3조, 별표 1~2)
- 정원의 총수 개정 (안 제2조)
 - 총 정원: 4,139명 → 4,376명(+237명)
 - 소방공무원 정원 : 2,279명 → 2,516명 (+237명)
 - 집행기관, 의회사무처, 교육공무원 정원은 변동 없음
-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소방직 : 2,279명 → 2,516명 (+237명)
 - ※ 소방령 이하 (+237명)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보흠)

-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 국가직 소방공무원 정원을 두는 근거규정 및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36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3월 4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7
----------	-----

제출연월일 : 2020년 3월 4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시행 : 2020. 4. 1.)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직 소방공무원 정원을 두는 근거규정 및 소방현장 인력 보장 반영 등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직 소방공무원 정원을 두는 근거규정 추가 (안 제1조)
- 본문 내용 및 별표 제목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조정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총 정 원 : 4,139명 → 4,376명 (+23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739명(변동 없음)
 - 소방공무원 정원 : 2,279명 → 2,516명 (+237명)
 - 의회사무처 정원 : 78명(변동 없음)
 - 교육공무원 정원 : 43명(변동 없음)
-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소방직 : 2,279명 → 2,516명 (+237명)
 - ▶ 소방령 이하 (+237)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4,139명”을 “4,37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본부”를 “본청”으로, “2,279명”을 “2,516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무원직급별”을 “공무원 직급별”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별표 1]

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도직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2]

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6% 이내	19% 이내	35% 이내	34% 이내	4.5% 이상	1.5% 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20% 이내	80% 이상	26% 이내	74%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2% 이내	4% 이내	10% 이내	9% 이내	18% 이내	30% 이내	27%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34% 이내	26% 이내	10% 이내	10% 이내	18% 이내	2% 이상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4,376	-				
정무직 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1,587	-				
1~2급	1					1
2~3급	2	1	1			
3급	11	9		1		1
3~4급	2	2				
4급	72	47	8	5	7	5
5급이하 소계	1,483	-				
전문경력관 소계	16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3	3				
5급상당 이하 소계	8	-				
연구직 계	189	-				
연구관	32	1		29	2	
연구사	157	-				
지도직 계	28	-				
지도관	6			6		
지도사	22	-				
소방직 계	2,516	-				
소방정	17	5		12		
소방령이하	2,499	-				
교육공무원 계	43	-				
총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2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u>지방공무원 정원</u>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u>지방공무원 정원</u>의 총수는 <u>4,139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소방본부</u> 및 <u>소방서</u>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2,279명</u> 3. ~ 4. (생략) <p>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u>지방공무원</u>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u>지방공무원직급별</u>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u>공무원</u> --.</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공무원</u> ----- -- <u>4,376명</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본청</u> ----- ----- <u>2,516명</u> 3. ~ 4. (현행과 같음) <p>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u>공무원</u> ----- -----.</p> <p>② <u>공무원 직급별</u> ----- -----.</p>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2020.4.1.시행】

제2조 (정원) ① ~ ② (생략)

③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0.4.1.시행】

제2조(시·도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 별자치 도
총계	60,166	7,196	3,537	2,713	3,176	1,529	1,568	1,286	507	10,277	4,008	2,516	3,741	3,138	4,006	5,095	4,798	1,075
소방 준감 이하	60,166	7,196	3,537	2,713	3,176	1,529	1,568	1,286	507	10,277	4,008	2,516	3,741	3,138	4,006	5,095	4,798	1,07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개정사유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시행 : 2020. 4. 1.)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직 소방공무원 정원을 두는 근거규정 및 소방현장 인력 보강 반영 등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정원조정 내역 (안 제2조)
 - 총정원 : 4,139명 → 4,376명(+237명)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
- 추계의 전제 : 증원 237명(소방공무원 237명)
- 추 계 결 과 : 인건비 98,451백만원 정도 추가 소요
- 재원조달방안 : 도비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인건비(소방공무원)	98,451,987	14,656,554	20,089,250	20,651,749	21,229,997	21,824,437

※ 매년 임금인상률 2.8%(예상치) 적용 계산

6.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두환